# 1. 운 용 총 칙

회계년도 : 2010년
예산차수 : 본예산
회계구분 : 식품진흥기금

① 기금설치 개요

(1) 설치근거 :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장수군 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

(2) 설치목적 :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향상

(3) 설치년도 : 2001년

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(1) 기금사업의 목표 : 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등으로 군민 건강 향상에 기여
식품위생에 관한 교육, 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비

(2)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 :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및 식중독 예방사업에 주력하므로서 올바른 음식문화의 정착과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

③ 기금조성 및 운용

(1) 기금조성 현황 (단위 : 천원)

| 2009년도 말 현재액 ⓐ | 2010년도 조성계획 | | | 2010년도 말 현재액ⓔ = ⓓ + ⓐ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수입 ⓑ | 지출 ⓒ | 증감 ⓓ = ⓑ - ⓒ | | |
| 35,595 | 2,500 | 11,700 | △9,200 | 26,395 | |

(2) 재원조성 :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,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,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

(3) 지원기준 : 장수군내에서 식품위생업을 하는 영업자(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)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, 식품위생관련 동업자조합의 자율지도원, 기금의 관리,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, 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하는 주민 등

(4) 지원대상 : 영업자(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)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(현재 기금조성 단계이므로 도청에서 실시),식품위생에 관한 교육, 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, 활동지원, 식품위생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, 연구사업,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, 기타 식품위생, 식중독 에방사업, 국민영야,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등